

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2. 5. 17
- 나. 제출자 : 사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2. 5. 17(의안 제 25호)
- 라. 심사일자 : 제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(2002.5.23)

2. 제안이유

- 도시계획조례 제정(2001. 12 .19공포) 이전에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추가,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세분과 부합되게 조정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천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제24조 제12호중 “일반상업지역, 중심상업지역,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”을 “일반상업지역, 중심상업지역, 근린상업지역,유통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”로 한다.
- 나. 별표4 아목, 별표5 차목, 별표17 아목 단서중 “경정비공장”을 “자동차부분정비업”으로 한다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가.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 가능한 행위에 준공업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도시계획조례 제정전까지는 준공업지역(신항만, 노산공원 옆, 구항만, 유람선 선착장 부근)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
- 나.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이 지역이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할 때 가능행위로 규정하지 않아 시민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,
- 다. 경정비공장을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바꾸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 1항 3호에 규정된 용어로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,
- 라. 주민의 재산권 행사 범위를 넓히며,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,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의결